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파운트 로보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□ 변경 사항 : ① 투자위험등급 변경 : 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4등급(보통 위험)

- ② 제6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
-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-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⑥ 전자증권법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4. 27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투자 위험 등급	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4 등급(보통 위험)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투자위험등급 변경	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	4 등급(보통 위험)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투자비용	제 6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4. 17. 기준</u> <u>2023. 3. 31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6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<u>2023. 4. 17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투자자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: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 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나믹 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혼합]」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	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: <삭 제>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

		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」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	<u>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」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(경과후) : 제 3(4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17 시 이전(경과후) : <u>3(4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(경과후) : 제 5(6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 9(10)영업일에 지급	17 시 이전(경과후) : <u>5(6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9(10)영업일</u>에 지급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[세액 공제]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700 만원</u>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(※ 지방소득세 별도)	[세액 공제]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900 만원</u> 한도로 12% <u>(종합소득금액 4.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</u>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(※ 지방소득세 별도)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 대상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 전자증권법 반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-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가) (생략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자한도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 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(생략) 〈신설〉	<u>〈삭제〉</u> <u>전자등록기관</u>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6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 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금융투 자업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등 주 석 기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</u> <u>화회사</u>	<u>〈삭제〉</u> <u>〈삭제〉</u>

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가. 일반위험	투자신탁 설정 6 개월 경과에 따른 기재 정정	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: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」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	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: <삭 제>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

			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나믹 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」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	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나믹 코리아5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」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나. 특수위험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작성기준	〈신 설〉	<u>증권대여위험 및 증권차입 위험 기재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작성기준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

			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3 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변경 투자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변경 내역	<u>표준편차 : 10.42%</u> <u>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 〈신 설〉	<u>표준편차 : 8.82%</u> 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 <u>2023.4.27 : 3 등급 → 4 등급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과 후) : <u>제 3(4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	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과 후) : <u>3(4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과 후) : <u>제 5(6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9(10)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	17 시[오후 5 시] 이전(경과 후) : <u>5(6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9(10)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
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5) 환매제한 <u>제 5(6)영업일</u>	5) 환매제한 <u>5(6)영업일</u>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6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 〈신 설〉	<u>2023. 4. 17. 기준</u> <u>2023. 3. 31. 기준</u>

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	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 주석 기재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항] <u>* 공제제도</u> <u>: 첨부 참조</u> <u>* 분리과세한도</u>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〈신 설〉 <u>*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</u> 〈추 가〉	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항] <u>* 공제제도</u> <u>: 첨부 참조</u> <u>* 분리과세한도</u>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 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 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</u> <u>*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</u> <u>: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 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5) 퇴직연금제도의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③ 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 좌에 납입한 <u>400만원</u> 이 내의 금액(종합소득금액이 <u>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한 300 만원 이내</u>)과 퇴 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을 합산하여 연 <u>700만원</u>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 의3 제1항제1호 및 제2	③ 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 좌에 납입한 <u>600만원</u> 이 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 여 연 <u>900만원</u> 한도로 12%(종합소득금액 <u>4.5천 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</u>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 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

		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6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<u>2023. 4. 17. 기준</u>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<u>증권대여 및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 비용 주식 기재</u> <u>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 주식의 매매회전을 기재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6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<u>2023. 4. 17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6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<u>2023. 4. 17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나. 주요업무 (3) 업무위탁	전자증권법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3 기(2020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4 기(2021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 (1) 주요업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	-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 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,

		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	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 업무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가. 수익자총회 등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제 5 영업일</u>	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생략)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2) ~ (3) (현행과 같음)

	투자신탁 설정 6 개월 경과에 따른 삭제	(4)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」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(1)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」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	(4) 《삭 제》 (1)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,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은 「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]」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	전자증권법 반영	<u>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	전자증권법 반영	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</u>	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</u>

		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	<u>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전자증권법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

		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	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--	--	---	---

[첨부]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